##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오영훈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9736 발의연월일: 2021. 4. 27.

발 의 자 : 오영훈・양이원영・윤관석

양정숙 · 강준현 · 용혜인

강득구・이병훈・송재호

박광온 · 홍성국 · 이성만

의원(12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020년 교육청과 소방청이 전국의 학교 중 5톤 소방자동차의 진입 가능 여부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41개 학교에서 소방자동차의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드러남.

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소방시설의 구비 현황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 여부는 곧 학생들의 안전 확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만큼 이 를 위한 정기적인 조사 및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.

이에 교육부장관은 매년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교육시설에서의 소방 시설 설치 현황과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고, 이에 따라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 관의 장에게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 도록 함으로써 화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0조의2 신설 등).

##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0조의2(소방시설의 실태조사 등) ① 교육부장관은 소방청장과 협의 하여 교육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.
  -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  -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.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고, 조치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3항에 따른 조치의 시기·방법·절 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21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의2.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

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여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현 행 <u>&lt;신 설&gt;</u>	제 정 안 제10조의2(소방시설의 실태조사등)① 교육부장관은 소방청장과 협의하여 교육시설에서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 현황에 관하여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.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,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사유가 없으면이에 따라야 한다.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해당교육시설의 장 또는 감독기관의 장에게 교육시설의 소방시설 설치 및 소방자동차의 진입로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.이 경우 명령을 받은
	수 있다.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에 따라야 하고, 조치 결과를

제21조(시정명령) 감독기관의 장 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할 수 있다.

1. (생략)

<신 설>

2. • 3. (생략)

제52조(벌칙) ① 다음 각 호의 어 저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<신 설>

<u>1.·2.</u> (생략)

②·③ (생 략)

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
<u>다.</u>
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
제3항에 따른 조치의 시기・방
법・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
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21조(시정명령)
1. (현행과 같음)
1의2. 제10조의2제3항을 위반하
여 교육부장관의 명령을 따
르지 아니한 교육시설의 장
2.•3. (현행과 같음)
52조(벌칙) ①
1.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명령
을 따르지 아니하여 공중의
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

<u>2. · 3.</u> (현행 제1호 및 제2호와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같음)